KMA 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우)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 8F[www.kma.org]/ 전화(02)6350-****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 [6574] 보험급여팀장 백영기 [6581] 과장 고영옥 [6573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0790호

시행일자 2018. 11. 30.

수 신 각 시·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정정 고시

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56호(2018. 11. 30)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의의3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49호, 2018.11.27.)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바랍니다.

○ 주요 정정 내용
- 일부 품목 코드 수정 등

○ 시행일 : 2018.12.1.

붙임: 고시개정문 및 내역 각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